

# 중국 상해의 교민과 한국종교

고병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종교학 전공  
03250@aks.ac.kr

- I. 머리말
- II. 상해시의 종교정책과 중국종교
- III. 상해시의 한국종교
- IV. 상해시 한국종교의 미래
- V. 맺음말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21-A00052).

## I.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상해시인민정부의 종교정책과 교민들의 종교활동을 살펴보고, 한국종교가 상해 지역에서 당면한 현실을 진단하면서 그 미래를 전망하는 데에 있다. 그에 따라 제2장은 상해시인민정부의 종교정책과 중국 종교 현황, 제3장은 현지조사와 인터뷰를 통한 교민들의 종교생활과 한국종교, 제4장은 상해시에서 한국종교가 당면한 과제와 미래에 대해 논한다. 이 연구는 문헌조사와 2010년 2월(1-4일)과 3월(2-5일)의 현지조사 및 인터뷰조사에 기초한다.<sup>1)</sup>

왜 상해인가? 상해시는 중국에서 주요 도시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현재 교민의 활동량도 적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연구 공간이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인에게 상해는 중국공산당의 탄생지(1921년), 문화대혁명의 진원지 및 4인방의 근거지, 장쩌민(江泽民)·주룽지(朱镕基)·우방궈(吳邦國)·리란칭(李嵐清) 등 중앙지도자의 배출지 등으로 기억된다. 또한 1980년대 중반까지 매년 중앙정부 세(稅) 수입의 1/4 정도를 부담한 주요 경제 도시이다. 2010년 현재, 상해에는 약 60개 이상의 외국 공관이 상주하고 있고, 5월부터 10월까지 세계박람회 기구(BIE)가 공인한 경제·문화올림픽인 '2010 상해엑스포'도 진행된다.<sup>2)</sup>

한국인에게 상해는 3·1운동 전후에 국내외 임시정부를 통합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윤봉길 의거(1932.4.) 직후까지 존재한 지역이다. 그리고 제1차 아편전쟁으로 중국 근대사의 최초 불평등조약인 남경조약(江寧條約, 1842년)과 호문조약(虎門條約, 1943년)이 체결되어 영국에 개방된 5개 통상항(通商港) 가운데 하나, 미국과 망하조약(望廈條約, 1844년), 프랑스와 황포조약(黃埔條約, 1844년)의 체결로 1845년에 영국 조계, 1848년에 미국 조계, 1863년에 양자가 합병된 공동조계가 설치된 지역으로 기억된다. 또한 공동조계 남쪽에 프랑스 조계, 청일전쟁 결과물인 시모노세키조약(下關條約, 馬關條約, 1895년)에 따라 일본의 조계지가

1) 제1·2차 현지조사는 각각 개신교·불교·총영사관, 개신교·천주교 방문과 인터뷰이다. 중국 정황상 실명 거론이 어렵지만, 안내자들과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감사한다. 이 글에서 교민(僑民)은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동포(同胞)와 혼용되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상해에 거주하는 사람(overseas Korean)을, '한국종교'는 한국 내 종교와 연결되고 교민들이 신앙하는 종교를 의미한다.

2) 상해엑스포 홈페이지 [www.expo2010.cn](http://www.expo2010.cn).

설치된 지역으로 기억된다.

특히 호문조약으로 중국은 영국인이 조약을 위반하여 ‘내지(內地)’로 들어가도 처벌권이 없어 영국 영사관에 인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제6조). 프랑스인에게도 유사한 상황이었다(황포조약 제23, 24조). 선교사가 불법적인 ‘내지’ 선교여행을 감행하여 ‘내지’ 실정을 파악해도 처벌권이 없었던 셈이다. 또한 미국은 5개 항 내의 교당 건립(망하조약 제17조), 프랑스도 교당 훼손에 따른 처벌과 자선기구와 교회학교의 건립(황포조약 제22조)을 확보하면서 개항장의 토지 점유율을 높이게 된다.

애로호사건의 연장선인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러·미·영·프와 체결한 천진조약(天津條約, 1858년)에는 ‘내지 선교의 자유’가 추가된다. 천진조약 비준서 교환 문제로 북경을 점령한 영·불 연합군과의 베이징조약(1860년)에는 과거 천주교 금지 조치로 인한 재산의 반환과 함께 선교사의 ‘내지 부동산 조매권(租買權)’까지 포함된다. 이후 외국인의 선교 허용 범위는 확대된다. 가령 의화단사건(1900년) 직후 11개국과 체결한 신축조약(辛丑條約, 1901년)을 통해 교회와 선교사, 교민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진행된다. 미국도 1903년 10월 청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중국 내지 부동산 조매권을 확보한다.<sup>3)</sup> 남경조약 이후 개항장, 조계지 설치, 치외법권, 외국인 처벌의 어려움 등의 상황은 한인들이 상해에 거주하는 정치적인 배경이 된다.

상해에 한인 거주가 확대된 계기는 1910년 한일합방과 1919년 3·1운동 등이다. 대종교, 천도교, 개신교, 천주교 등도 상해에 진출한다.<sup>4)</sup> 대종교는 상해를 서이도본사(西二道本司)에 포함시키고, 천도교는 1920년에 천도교회(聖化會室)을 마련한다. 1921년 2월에는 상해의 천도교·대종교·개신교가 연합하여 각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광복기도회’도 진행된다.<sup>5)</sup> 1920년대에는 주요 예배 장소를 프랑스 조계나 공공조계에 설치한 개신교가 상해 한인 가운데 약 70% 정도의 교세, 아울러 대한민국임시정부나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등에 참여하며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인다.<sup>6)</sup>

3) 최병욱, 「近代 中國 不平等條約 中の 基督教 관련 조항의 의미」, 『중국근현대사연구』 37집(중국근현대사학회, 2008), 1-22쪽.

4) 孫科志, 「上海韓人的宗教活動」, 『檔案與史學』(2000), 58쪽.

5) 「光復祈禱會餘聞」, 《독립신문》 1921년 2월 17일자(출처: 독립기념관).

6) 孫科志, 『상해한인사회사』(도서출판 한울, 2001), 190-201쪽.

1949년 10월의 공산화 이후, 한인의 상해 거주와 한국종교의 상해 재진출 계기는 1992년 8월의 한중수교이다. 1993년 4월부터 주상하이총영사관의 공식 업무가 시작되고, 한국 기업의 진출과 방문객이 확대되면서 1993년에 상해한국상회(上海韓國商會)가 출범한다.<sup>7)</sup>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현황」(2009.5.12)에 따르면, 상해의 재외동포 총수는 60,006명(시민권자 14,597명, 영주권자 9명, 일반 체류자 40,000명, 유학생 5,400명), 재외국민 등록수 14,175명<sup>8)</sup>, 또는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를 제외한 45,409명이다(2009.5.1).<sup>9)</sup>

표1-주상하이총영사관 통계(2009.5.1 기준)

중국		총계			지역별						
					상해시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구분		남	여	계	남	여	계	계	계	계	
재외동포총수				91,335							
거주자 격별	외국국적 동포 (시민권자)			14,597			14,597				
	영주권	14	11	25	5	4	9	11	3	2	
	재외 국 민	일반 체류	38,149	30,350	68,499	21,100	18,900	40,000	21,500	6,900	99
	유학생	4,474	3,740	8,214	2,800	2,600	5,400	1,583	1,107	124	
	계	42,637	34,101	76,738	23,905	21,504	45,409	23,094	8,010	225	
재외국민 등록수		10,888	8,979	19,867	7,467	6,708	14,175	4,163	1,430	99	

물론 한중수교가 한국 종교단체의 표면적인 상해 진출 계기가 될 수는 없다. 현재까지도 중국은 외국 종교단체를 사회단체나 종교단체로 공인하지 않고, 교민들의 종교 모임 정도만 허용 또는 묵인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중수교가 상해에서 한국종교의 활동 계기였음은 분명하다. 한국에서 배출되거나 임명된 성직자가 교민들의 종교 모임을 주도하고, 이 모임들이 한국종교와 모종의 교류를 지속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1949년 10월 공산화 이후에 상해의 한국종교 문제를 다룬

7) 상해한국상회 [www.kochamsh.com/makeinfo.php](http://www.kochamsh.com/makeinfo.php).

8) 외교통상부 [www.mofat.go.kr/consul/overseascitizen/compatriotcondition/index.jsp](http://www.mofat.go.kr/consul/overseascitizen/compatriotcondition/index.jsp) (2009.5.12.자료).

9) 외교통상부 [www.mofat.go.kr/consul/overseascitizen/policy/index.jsp](http://www.mofat.go.kr/consul/overseascitizen/policy/index.jsp).

선행연구는 부재하다. 그나마 상해 지역의 한국종교 문제를 다룬 소수의 연구는 공산화 이전에 한정된다.<sup>10)</sup> 현재 현대 중국의 한국종교 관련 연구들이 나오는 상황에서<sup>11)</sup>, 향후 이 연구가 상해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 해외 교민들의 종교활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촉발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II. 상해시의 종교정책과 중국종교

2010년 현재, 상해시 지역은 화동(华东)의 제1도시로서 경제·금융·무역·항운의 중심지이고, 중국의 4개 중앙직할시 가운데 하나이다. 행정구역은 포동신구(浦东新区, 3,057,000명), 민행구(闵行区, 1,804,700명), 보산구(宝山区, 1,406,300명), 양포구(杨浦区, 1,194,800명), 보타구(普陀区, 1,087,100명), 송강구(松江区, 1,074,200명), 가정구(嘉定区, 1,034,200명), 서회구(徐汇区, 982,200명) 등 17개 구와 1개 현(县)으로 구분된다.<sup>12)</sup> 그 가운데 교민들의 주된 거주 공간과 교민의 종교 모임이 진행되는 공간은 주로 민행구의 코리안타운과 포동신구이다.

주지하다시피, 각 성·시의 정치권력 구조는 중국공산당(중공),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무원(중앙인민정부)이라는 중국 중앙의 삼분 구조를 갖는다. 이 삼분 구조에서 중공 중앙은 당의 최고의결기관인 전국대표대회(매5년, 全黨大會)에서 탄생되는 최고영도기관이다. 중국공산당의 당 중앙 조직은 당중앙위원회(중공중앙)·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위)·중앙군사위원회(중앙군위)이고, 성·지구·현급 기율위원회·당위원회·군구로 연결된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과 연계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조직은 상무위원회·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이고, 성·지구·현급 인민대표대회·인민법원·인민검찰원으로 이어진다. 국무원의 조직도 성·지구·현급 인민정부로 이어진다.<sup>13)</sup>

10) 孫科志, 「上海韓人的宗教活動」, 『檔案與史學』(2000); 孫科志, 『상해한인사회사』(도서출판 한울, 2001) 등.

11) 강돈구, 「현대 중국의 한국종교 -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54(한국종교학회, 2009); 고병철, 「개혁개방 이후 중국 킬림성의 종교 정책과 한국 종교」, 『중국학논총』 25(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09); 박미라, 「중국 요녕성 한국종교의 현황과 문제」, 『아시아문화연구』 17(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9); 윤용복, 「중국 흑룡강성의 한국 종교」, 『종교문화비평』 17(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0).

12) <http://baike.baidu.com/view/1735.htm#3>.

상해시 정치권력도 중국 중앙의 경우처럼, 중공상해시위원회·중공상해시기율검사위원회의 당중앙, 상해시인민대표대회·정협(政协)상해시위원회, 상해시인민정부의 삼분 구조이다.<sup>14)</sup> 시장(市長)은 행정상 일인자이지만 시위원회의 제1, 제2부서기로서 시위원회와 연계된다. 정협상해시위원회가 선거와 투표로 정책결정을 하기 이전에 협상을 담당한다면, 인민대표대회는 표결로 정책결정을 하고, 인민정부는 정책결정을 집행한다. 정치권력의 삼분 구조가 상호 연계되는 것이다.

정치권력의 삼분 구조에 따라 상해시의 종교정책은 중공상해시위원회(당서기) → 정협상해시위원회(정협주석)·상해시인민대표대회(인대주임) → 상해시인민정부(상해시장) 순으로 결정·집행된다. 종교정책의 집행부서는 상해민족·종교사무위원회(上海民族和宗教事务委员会, 이하 민종위)이다. 민종위는 한국종교를 포함한 외국의 종교인이나 종교단체 뿐만 아니라, 중국의 종교단체나 종교 교직자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다.<sup>15)</sup>

민종위의 종무행정은 크게 외국 종교 관련 행정, 그리고 종교활동장소와 종교활동 관련 행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종립학교·5대 종교·종교문화학술교류 등과 관련된 외국 종교인의 채용이나 설교·설법이나 초빙이나 종교용품 휴대 등에 대한 것이다. 후자는 종교활동장소나 물품 관련 심사와 비준 등에 대한 것이다. 의외로 종교 관련 외국인에 대한 행정 업무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민종위의 종무행정 내용과 그 근거인 유관 규정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sup>16)</sup>

13) 자본시장연구원 [www.kcmi.re.kr/](http://www.kcmi.re.kr/). 「중국의 국가권력기구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2009.9), 1-2, 16쪽. 중국공산당은 정치사상의 지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인민민주독체의 실천을 담당한다.

14) 上海市人民政府 연감 [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2743/index.html](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2743/index.html).

15) 가령 민종위는 2009년 5월 7일에 상해 민종위 책임자(领导)와 시종교단체 책임자(负责人), 각 종교문화반 반주임 등 60여 명이 참석한 종교교직자 소양교육 연구토론회(宗教教职人员素质教育研讨会)를 개최하여 문화교육의 지속, 문화 수준과 정치 소양 및 종교조예(宗教造诣) 제고의 결합, 배움과 활용 등을 강조한다. 민종위 [www.sara.gov.cn/GB//xwzx/dtxx/a3b56088-571b-11de-b982-93180af1bb1a.html](http://www.sara.gov.cn/GB//xwzx/dtxx/a3b56088-571b-11de-b982-93180af1bb1a.html).

16) 上海市人民政府 [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6/node2639/index.html](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6/node2639/index.html).

표2-민중위의 중무행정과 근거 규정

중무행정 영역	유관 규정
① 중립학교[宗敎院校]의 외국인전문가 채용 심사·비준	上海市宗教印制品管理办法 上海市宗教活动场所管理规定 上海市宗教事务条例 上海市清真食品管理条例 上海市少数民族权益保障条例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国务院令 第44号, 1994.1.31)
② 중립학교 외국인전문가 자격 인가	
③ 5대 종교 외 외국 종교단체와 중국 정부부서 혹은 종교계 등의 왕래 심사·비준	
④ 종교문화학술교류시 외국인의 휴대 종교용품 심사·비준	
⑤ 비종교인 신분으로 초청·입국한 외국인의 설교·설법[讲经讲道] 심사·비준	
⑥ 대형 종교활동 심사·비준	
⑦ 종교활동장소 내의 개축 또는 신축 건축물 심사·비준	
⑧ 종교활동장소 내 판매점 설립 심사·비준	
⑨ 종교활동장소 내의 전시·전람·영화 촬영·TV 제작물 심사·비준	
⑩ 종교단체·사관교당의 종교 내부 출판물이나 기타 종교 인쇄품 심사·비준	
⑪ 종교활동장소 외부에 만든 대형 노천 종교 조형물 심사·비준	
⑫ 대형 노천 불상 건조(建造) 심사·비준	
⑬ 종교활동장소 기획·준비·설립	
⑭ 중립학교 설립 허가	

민중위의 중무행정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규정은 1995년 인민대표대회(제10차) 상무위원회(제23차)에서 통과된 후, 2005년 인민대표대회(제12차) 상무위원회(제19차)에서 수정된 「상해시종교사무조례」(이하 「사무조례」)<sup>17)</sup>이다. 「사무조례」는 상해시 종교정책의 기본 방향이고, 외국 종교와 관련된 핵심 규정이며, 국무원의 「종교사무조례」와 기타 유관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한 것이다. 「사무조례」를 통해 상해시가 공민(公民)의 종교신앙자유 보장, 법률적 종교사무 관리, 종교화목과 사회화해의 유지(제1장 제1조) 등을 기본적인 종교정책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해시의 기본적인 종교정책은 중국 중앙의 종교정책과 연장선에 있다. 가령 교파·종파의 불인정, 다섯 개 종교의 공인, 외국인의 중국인 선교 금지, 외국인들 내의 종교활동에 대한 중국 당국의 허가 필요, 중국인들 내의 종교활동과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중국 당국의 허가 필요,

17) 「上海市宗教事务条例」1995年11月30日上海市第十届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三次会议通过。根据2005年4月21日上海市第十二届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九次会议『关于修改「上海市宗教事务条例」的决定』修正。민중위 [www.sara.gov.cn/GB/zcfg/dfxf/g/e46e6e97-0a1e-11da-9f13-93180af1bb1a.html](http://www.sara.gov.cn/GB/zcfg/dfxf/g/e46e6e97-0a1e-11da-9f13-93180af1bb1a.html).

성직자 양성과 임명에 대한 국가의 관여, 성직자에 대한 국가의 일정한 생활보조비 지급, 종교시설물의 신축·보수에 대한 정부의 경비 보조 등이 중국의 종교정책이라면<sup>18)</sup>, 이는 상해시의 종교정책에도 거의 반영된다. 그렇지만 요녕성의 점술인 목인 현상<sup>19)</sup>, 흑룡강성의 한국 천주교와 중국 천주교의 연관성<sup>20)</sup> 등 종교정책은 지역마다 실질적인 면에서 다소의 차이가 나타난다.

상해시의 「사무조례」는 제1장(총칙), 제2장(종교단체), 제3장(종교교직인원), 제4장(종교활동장소), 제5장(종교활동), 제6장(종교교직자 배출 학교; 院校), 제7장(종교재산), 제8장(섭외종교사무), 제9장(법률책임), 제10장(부칙) 등 총 10장 63조로 구성된다. 「사무조례」의 주요 방향은 제1장(총칙)에 명시되는데 그 내용은 종교신앙자유, ‘합법적’ 권익과 ‘정상적’ 종교활동에 대한 법률 보호와 위법 활동 금지, 국가행정·사법·학교교육·사회공공교육에 대해 개입 금지 원칙, 국가주권과 독립자주자영(独立自主自力) 원칙에 따라 외국 세력의 지배 금지 등이다(2-5조).

제2장에는 종교단체 성립 과정(7조), 종교단체가 종지와 각자의 규정에 따른 활동과 정부의 유관 법률·법규의 관철·집행에 대한 협조(8조) 등, 제3장에는 교직자 신분 성립 과정(12조)과 교직자의 사회보험 참가(13조), 제4장에는 종교활동장소 개념(16조) 및 종교활동장소의 기획·준비와 설립 과정(17조) 등이 명시된다. 제5장에는 종교활동 가능 장소(25조)와 일상 규모 이상이나 종교활동장소 이외의 대형 종교활동 거행시 유의사항(26조) 등, 제6장에는 종립학교(宗教院校)의 설립 과정(32조)과 비용 충당(37조) 등, 제7장에는 종교 재산 개념(38조) 등, 제8장에는 외국인의 종교활동(45조) 등, 제9장에는 규정 위반과 각종 종교 침해시의 책임(51조) 등이 명시된다.

특히 외국의 종교단체 관련 규정은 「사무조례」 제8장(45-50조)이다.<sup>21)</sup> 제8장에는 시(市)의 종교활동장소 내에서 외국인이 종교활동에 참가할 수 있고, 각종 종교의식(道场法会·세례·혼례·장례)을 거행할 수 있다는 점<sup>22)</sup>, 외국인의 종교활동이 종교활동장소 또는 지정한 장소 또는 임시지

18) 강돈구, 앞의 글, 76-87쪽; 고병철, 앞의 글, 258-267쪽.

19) 박미라, 앞의 글, 262-263쪽.

20) 윤용복, 앞의 글, 314-318쪽.

21) 「상하이시 종교관련 법률 안내」, 《상하이저널》, 2006년 4월 11일자.

22) 제45조의 “本市宗教活动场所可以应外国人的要求为其举行道场, 法会, 洗礼, 婚礼, 葬礼



점 내에서 상해시 종교단체조직에 의해 거행될 수 있다는 점, 교직자 신분으로 초청된 외국인이 종교활동장소에서 강의할 수 있다는 점, 외국인이 종교단체 및 종교 사무기구, 종교활동장소, 종교학교를 설립하거나 공민의 신자 만들기, 교직자의 위임, 종교 선전품의 배포, 기타 선교·포교 활동이 금지된다는 점, 교류가 자주독립·상호존중·상호불간섭·평등우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종교 조건이 부가된 경제·무역·문화·교육·위생·체육 등의 교류가 금지된다는 점 등이 명시된다.

「사무조례」 내용을 위반하면 내국인은 제9장 제51-60조, 외국인은 제61조에 규정된 법률 책임을 받게 된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종무부와 유관부서의 제지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입·출국 관리행위나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하면 공간기관이 법에 의해 처벌하고,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의해 형사책임이 추궁된다. 외국인의 종교활동에 대한 규정은 중앙인민정부가 제시한 1994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제1, 2조와 유사하다.<sup>23)</sup>

현재 상해시는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만을 공인한다. 물론 근대 이후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이 진출한 상해에는 다양한 종교단체들이 존재해왔다. 이를테면 불교에도 여러 종파가 있었고, 그 외에 공산화 직후까지 리교(理教), 동방정교회(东正教, Orthodox), 유대교(犹太教), 배화교(祆教), 석극교(锡克教) 등의 종교단체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현재는 공식적으로 다섯 종교만 인정하는 공인교정책이 진행된다.<sup>24)</sup>

상해시가 정책적으로 공인·관리하는 종교 현황을 보면, 1982년 제3차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종교 교직원의 수가 213명(남 131, 여 82)이다. 그 연령은 대다수 50세 이상으로, 55세 이상의 남성이 114명, 50세 이상의

等宗教仪式”에서 도량(道场)은 종교의식이 아니라 공간을 지칭한다. 그렇지만 도량 개념에는 “佛教徒诵经, 礼拜, 修道的行为”도 포함된다. <http://baike.baidu.com/view/141165.html?wtp=tt>.

23) 주선양총영사관(<http://chn-shenyang.mofat.go.kr/kor/as/chn-shenyang/help/search/index.jsp>)의 ‘중국 체류관련 유의사항(2005.5.27)’;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国务院令44号, 1994.1.31)

24) 阮仁澤·高振農 主編, 『上海宗教史』(上海人民出版社, 1992). 『上海宗教史』는 상해사회과학원 종교연구소에서 기획한 출판물로 상해불교사, 상해도교사, 상하이슬람교사, 상해천주교사, 상해기독교사의 5개 개별 종교사로 구성되어 있다(같은 책, 1020쪽. 后记 참고). 张化, 『上海宗教通攬』(上海古籍出版社, 2004), 558-566쪽. 리교는 1894년 청나라 시기에 등장했으며, 1963년 10월에 종교활동이 중지된다. 석극교는 인도 석극족의 종교로 보이며, 1962년 10월 종교활동이 중지된다.

여성이 76명이다. 교육 수준은 고중(高中) 이상이 100명, 대학 졸업 이상이 45명이었다.<sup>25)</sup> 그 후 종교의 현황은 시정부의 지원하에 점차 확장된다.

2010년 현재, 다섯 개 종교의 공식 종교활동장소는 262곳, 신자 수는 70만 명 이상, 종교 교직원 수는 1,487명이다.<sup>26)</sup> 여기서 종교 교직원은 불교의 비구·비구니, 도교의 도사(道士)·도고(道姑, 여도사), 천주교의 주교·신부(神甫)·수사(修士)·수녀(修女), 기독교의 주교(主教)·목사(牧師)·장로(長老)·전도(传道), 이슬람교의 교장(教長)·아꿍(阿訇, imam)·여아꿍(女阿訇)을 의미한다.<sup>27)</sup> 1982년에 비해 2010년에 종교 교직원의 수가 7배 정도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현재, 상해시의 시급 종교조직은 9개로, 상해시불교협회, 상해 시도교협회, 상해시이슬람교협회, 천주교상해교구, 상해천주교애국회, 상해시천주교교무위원회, 상해천주교지식분자연합회(上海天主教知识分子联谊会), 상해시기독교교무위원회, 상해시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이다.<sup>28)</sup> 종교조직이 그리스도교계에 집중되어 있는 셈이다. 이는 간접적으로 중국에서 그리스도교를 선교 중심의 종교, 국외와 연계된 종교 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립학교(宗教院校)는 5개로, 상해불학원(上海佛学院), 상해도학원(上海道学院), 천주교사산수원(天主教佘山修院, 泰来桥 分院 포함), 천주교수녀원(上海天主教修女院), 기독교화동신학원(基督教华东神学院)이다. 종립학교의 졸업생은 모두 1,000명 정도이고, 현재 학생은 모두 330명 정도이며, 상해도학원에는 일시적으로 학생이 없다고 한다. 졸업생들은 대부분 상해와 유관 성시(省市)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에서 교직활동을 하며, 일부 졸업생은 종교단체가 이끄는 근무처에 근무하게 된다.<sup>29)</sup> 종립출판사는 2개로, 상해불학서국(上海佛学书局), 천주교광계사(天主教光启社) 등이 있다. 출판물은 '종교 인쇄품'으로서 규정에 따라 관리를 받는

25) 胡煥庸 主編, 『中國人口(上海分冊)』(1987), 320쪽.

26) 상해시 민중위 [www.shmzw.gov.cn/](http://www.shmzw.gov.cn/)

27) 「上海市宗教活动场所管理规定」(一九九五年五月十九日上海市人民政府第三号令发布) 第七条(宗教教职人员概念). 人民网 法律法规库 [www.people.com.cn/item/flfgk/dffg/1995/C122002199502.html](http://www.people.com.cn/item/flfgk/dffg/1995/C122002199502.html). 이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로 폐지되었음.

28) 상해시 민중위 [www.shmzw.gov.cn/](http://www.shmzw.gov.cn/)

29) 상해시 민중위 [www.shmzw.gov.cn/gb/mzw/shzj/zjyx/index.html](http://www.shmzw.gov.cn/gb/mzw/shzj/zjyx/index.html).

다.<sup>30)</sup>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상해시 중국종교 현황

종교	주요 종교활동장소	종립학교	종립 출판사	시급 종교단체
불교	70곳: 玉佛禪寺, 龍華寺, 靜安寺	上海佛學院	上海佛學書局	상해시불교협회
도교	14곳: 上海城隍廟, 白雲觀, 欽賜仰殿道觀	上海道學院		상해시도교협회
이슬람교	7곳: 小桃園清真寺, 福佑路清真寺, 滬西清真寺			상해시이슬람교협회
천주교	75곳: 徐家匯天主堂, 董家渡天主堂, 露德聖母堂	① 中國天主教 余山修院 ② 上海天主教 教修女院	天主教光 社	① 천주교상해교구 ② 상해천주교애국회 ③ 상해시천주교교무위원회 ④ 上海天主教知識分子聯 誼會
기독교	103곳: 上海國際禮拜堂, 沐恩堂, 基督教滬東堂	基督教華東神 學院		① 상해시기독교교무위원회 ② 상해시기독교삼자애국운동 위원회
비고	종교활동장소 262소, 종교인 약 70만 명, 교직자 1,487명			

지금까지 상해시 행정의 정치권력 구조, 종교정책의 결정과 집행, 중무부서의 주요 행정 업무, 중무행정의 핵심 규정과 내용을 검토한 후, 상해시의 중국종교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상해시의 정치권력 구조나 종교정책이 중국 중앙의 영향을 받아 상호 연관되고 있고, 그 속에서 중국의 다섯 개 종교가 안정성을 공인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상해시의 한국종교

외국 종교단체의 성립과 중국인에 대한 선·포교가 허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해시의 한국종교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① 인터넷 검색 자료, ② 외교부의 자료, ③ 상하이총영사관의 관계자 면담, ④ 현지조사, ⑤ 상해시 연구자나 관계자 면담, ⑥ 상해시 민중위나 공안국

30) 「上海市宗教印製品管理辦法」(發布日期: 1997年12月31日), 『大陸宗教概況(一九九六年~二〇〇一年)』(行政院大陸委員會, 2002), 417-421쪽.

의 관계자 면담, ⑦ 문헌조사 등을 통해 상해시의 한국종교 현황이 어느 정도 파악된다. 물론 여러 제약 때문에 모든 통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외교통상부 자료(2005년)에 따르면, 상해시에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모임이 존재한다. 개신교의 경우에는 약 2,000명의 신도를 보유한 상하이한인연합교회가 중국 교회당을 빌려 일요일 4부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 6개의 개신교 모임들이 존재한다. 천주교의 경우에는 천주교 군주당(君王堂)에서 토요일 미사를 한국인·외국인 신부가 공동 집전한다. 불교의 경우에는 신도 수 약 100명 수준이다. 그리고 당시 1년 이상 장기거류 교민이 약 2만 명 정도이고, 유학생이 3,500명 내외(어학연수자 포함)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신교·불교 인구만 한국 교민 전체의 10%가 넘는다고 한다.<sup>31)</sup>

인터넷 검색 자료에는, 출처의 부정확성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사찰 등의 정보가 외교통상부 자료보다 풍부하다. 표4는 여러 인터넷 검색 자료를 토대로 상해시의 한국종교 현황을 재구성한 것이다.

표4-상해시 한국종교 현황

지역	주소
포동(浦東)/ 포동신구(浦東新區)	- 개신교: 상해포동한인연합교회, 상하이한인교회, 상해포동한인교회, 상하이멘교회, 상해한인교회, 상해포동연합교회, 세계한인교회, 상하이예능교회 - 천주교: 금가항 성당/당묘교 성당 - 원불교
중경남로(重慶南路)	- 천주교: 상해한인성당(성베드로성당)
민행구(閔行區)	- 개신교: 상하이한인연합교회, 상해한인순복음교회, 상해할렐루야교회(조선족교회), 상해온누리교회, 상해한인장로교회, 한국웨스턴미스터신학교, 상해소망교회, 상하이제자교회, 상해열방선교교회 - 불교: 상해한국법당문화원, 태안사, 금강사
포서(浦西)	- 개신교: 상해한인은혜의 교회, 상해열린교회
기타	- 개신교: 상해국제예배당, 재상해한인교회, 상해동락교회, 상해제자교회, 상해한인새순교회

31) 외교통·상부 국가별정보DB(<http://countryinfo.mofat.go.kr/index.html>)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생활·교육·문화' 1번 게시물(중국/상하이) 내의 제11번(종교활동)과 제15번(재외동포 현황) 항목(등록일: 2005.05.22).

위의 자료를 토대로 필자는 2010년 2월과 3월에 제1·2차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제1차 현지조사의 경우, 2010년 2월 1일에는 소규모 종교 모임 방문과 인터뷰, 2월 2일에는 태안사(太安寺) 방문과 인터뷰, 상하이총영사관 방문과 영사 인터뷰, 2월 3일에는 상하이한인연합교회 수요일예배 참관과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제2차 현지조사의 경우는 개신교회 2곳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외에 지인들의 소개로 개신교와 천주교 관계자들을 만나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불교의 경우, 상해 지역에는 민행구(闵行区) 우중루(无中路)의 상해정토 불교대학, 홍신루(虹莘路)의 태안사, 홍중루(虹中路)의 금강사, 명도성(名都城)의 용화선원 등이 있다.<sup>32)</sup> 그렇지만 상해의 초기 한인불자회는 1992년에 결성된 반야성사이다. 반야성사는 1999년부터 유학승인 광양 운암사 주지(지엄스님)의 지도로 신행활동이 활발해진다. 지엄스님이 귀국한 이후에도 비정기적인 방문, 한국 승려(대우스님)의 방문을 통해 신행활동 지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2006년 아파트 아래층 주민의 신고로 반야성사는 폐쇄당한다.<sup>33)</sup>

금강사(주지: 각문스님)의 경우는 상해한인법당으로서 교민들을 대상으로 성지순례, 일요법회, 초하루법회, 불교대학, 단전, 요가, 차 모임 등을 운영한다.<sup>34)</sup> 그러다가 2006년 5월 21일에 한국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5호급 아미타불상으로 불자 300여 명과 함께 점안식<sup>35)</sup>을 거행한다. 이때 반야성사의 불자들도 함께 점안식에 참여하였다고 한다.<sup>36)</sup> 금강사는 2008년 1월에 홍중루에서 우중루로 이전한다.<sup>37)</sup>

필자가 방문한 태안사(주지: 서강스님)는 2006년 2월, 한 여성의 노력으로 상해 홍신루의 단독 건물에서 시작된다.<sup>38)</sup> 동년 3월 5일에는 한국에서

32) 상하이저널 홈페이지 [www.shanghaijournal.com/biz.php?mode=search&code=BB](http://www.shanghaijournal.com/biz.php?mode=search&code=BB).  
 33) 「중국 내 한인불자 신행활동-‘독립운동’ 하듯이 마음 풀이며 법회», 《불교신문》 2255호, 2006년 8월 23일자.  
 34) 「종교행사 안내», 《상하이저널》, 2006년 2월 15일자. 금강사 홈페이지 <http://cafe.daum.net/zentea114>.  
 35) 점안식은 불상을 처음 모실 때 붓다에게 지혜와 광명의 혜안을 구하여 다시 삶 속에서 중생 구제의 생명력을 갖고 영원한 진리를 구현하도록 염원하는 행사이다.  
 36) 「금강사, 점안식 행사 가져/반야성사와 함께 예불... “佛心 한테 모아”», 《상하이저널》, 2006년 5월 30일자.  
 37) 「상하이 한인법당 ‘금강사’ 우중루 이전», 《상하이저널》, 2008년 1월 29일자.  
 38) 「한인불교 사찰 태안사, ‘불자들의 안식처 될 터’», 《상하이저널》, 2006년 2월 28일자.

조성된 석가모니불을 봉안하는 점안식(증명법사: 중국 회룡사 주지 계보 스님)이 거행된다. 흥미로운 부분은 태안사가 중국 회룡사의 말사로 등록되어 합법성을 보장받고, 그에 따라 교민 불자들의 자유로운 사찰 출입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이런 점 때문에 당시 태안사는 상해시 교민 불자들의 신행활동에 활력을 넣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물론 중국 한족이나 중국 국적의 조선족은 공식적으로 태안사에서 일체 종교활동이 불가능했다고 한다.<sup>39)</sup>

필자는 태안사 방문 이전에 2008년 5월에 태안사가 홍신루에서 번지수를 달리하여 이전하였다는 보도<sup>40)</sup>, 2009년에 불자의 수가 70여 명이었던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sup>41)</sup> 실제로 태안사의 외관은 다른 주택 사이에 있는 2층의 단독주택이었다. 내부는 개조되어 법당, 식당, 승려의 거주 공간 등이 구분되었다. 대학생불교연합회<sup>42)</sup> 출신의 태안사 관계자에 따르면, 태안사의 신자 수는 약 70명 정도이고, 상해시의 다른 한인 불교 사찰도 태안사처럼 주택을 개조한 것이라고 한다.<sup>43)</sup>

2010년 태안사의 공식 법회는 초하루법회, 보름법회, 지장재일불공, 관음재일불공, 다라니기도, 일요가족법회, 매월 지장 삼천배 정진기도이다. 그렇지만 현재 일요가족법회는 진행되지 않고, 사시마지 법회가 매일 진행된다고 한다. 초빙된 주지는 그동안 주로 대학생불교연합회 시절의 인맥에 의한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의 승려였고, 현재는 승려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태안사에 대한 조계종의 지원도 없고, 태안사도 조계종 소속 사찰이 아니라고 한다.<sup>44)</sup>

개신교의 경우, 한인 교회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교민 대상의 현지 광고지에서 포동 지역에 있는 상하이예능교회·상하이한인교회·상해아멘교회·상해영락교회·포동은혜의교회·포동한인연

39) 「태안사 점안식 가져」, 《상하이저널》, 2006년 3월 13일자.

40) 「태안사」, 《상하이저널》, 2008년 5월 31일자.

41) 능인선원 홈페이지([www.gotobuddha.org/home/default\\_in.asp](http://www.gotobuddha.org/home/default_in.asp)) 커뮤니티의 자유게시판 5336번 자료.

42) 대학생불교연합회는 1963년에 창립된 단체. 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홈페이지(<http://www.daebul.or.kr/>) 참고.

43) 필자가 제1차 현지조사에서 처음 방문한 소규모 종교 모임(50여 명)도 주택을 개조해 사용하고 있었다.

44) 「한인불자 신행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언」, 《불교신문》 2255호, 2006년 8월 23일자; 「중국 내 한인불자 신행활동 - '독립운동' 하듯이 마음 풀이며 법회」, 《불교신문》 2255호, 2006년 8월 23일자.

합교회, 포서 지역에 있는 홍중로의 상하이한인연합교회, 우중루의 상해 새순교회, 이산루의 상해한인장로교회·상해은누리교회·포서한인성결교회, 홍신루의 상해한인성산교회, 구베이의 상해은혜의교회, 허촨루의 상해한인순복음교회, 복단대 근처의 상해우리교회 등 15개 교회 명칭이 보인다.<sup>45)</sup> 이들 외에도 상해한인열린교회, 상해아멘교회 등의 교회 명칭이 보이지만<sup>46)</sup> 전체 교회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필자는 제1, 2차 현지조사에서 상하이연합교회(이하 연합교회)의 주요 예배를 참관하고, 교회 내부를 견학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sup>47)</sup>, 관계자에 따르면 연합교회는 한중수교 이전인 1993년 9월 한 가정에서 시작되어, 5년 후인 1998년 9월에 엔젤유치원을 개원한다. 교회 허가 이전에는 예술학교 강당에서 예배가 진행되었지만 2000년 6월부터 예배장소를 중국 교회(신경당)로 옮겨 당국의 허가 하에 예배가 진행된다. 중국 교회는 오전에만 예배를 진행하기 때문에 오후에 교회를 빌릴 수 있었다고 한다. 2002년 6월에 예장(합동) 출신의 담임목사(엄기영)가 취임한 후 교세가 확대된다.

2005년 3월 27일(부활절)에는 신경당교회에서 독립하여 한국엔젤유치원의 3층 건물(층당 1,157제곱미터)을 예배장소로 임차하고 '종교집회시설'로 허가를 받는다. 상해에서 독립 건물을 종교집회 시설로 허가받은 유일한 경우라고 한다. 그렇지만 연합교회는 독립된 예배공간을 확보한 직후에도 신경당에서 4부 예배를 진행한다.<sup>48)</sup> 그 이유는 신경당교회가 임대료 수입을 위해 연합교회에게 별도의 종교활동 임시지점 허가를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합교회는 점차 교세가 확장되고, 2008년 12월 중순에는 우중루의 임대 건물에서 홍중루의 4,000제곱미터 규모의 5층 신축 건물로 예배당을 이전한다.<sup>49)</sup>

실제로 연합교회는 가나안호텔과 엔젤유치원이 붙은 5층 규모의 건물을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연합교회는 상해시의

45) 《상하이저널》 제538호, 2010년 2월 27일자. 교회 광고로, 이들 교회 외에 황금록교회가 연합회에 포함된다(제2차 현지조사 확인).

46) 상하이저널 홈페이지 [www.shanghaijournal.com/biz.php?mode=search&code=BB](http://www.shanghaijournal.com/biz.php?mode=search&code=BB).

47) 2월 3일 오후 1시 수요예배의 예배 참여 인원은 150-200명 정도였고, 거의 30-40대 주부들로 보였다.

48) 《국민일보》, 2005년 7월 3일자.

49) 「교회건물, 교민사회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상하이저널》, 2009년 1월 13일자.

건물 임대 허가를 받고 건물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한다. 건물 임대료는 적지 않지만 1층을 상점들에 재임대하고, 가나안호텔과 엔젤유치원도 재임대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재정상 문제는 없다고 한다. 2010년 현재, 연합교회는 민중위에서 유일하게 종교활동을 위한 '임시지점'으로 허가한 경우이며, 약 3,000명(성인 1,000명)의 신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연합교회는 한국의 예장(합동) 소속이지만, 교파 연합을 지향한다. 실제로 필자는 예배 참관시 담임목사가 각 교파별 성직자 10여 명을 단상 앞으로 불러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성직자는 15명(담임 1명, 부목사 10명, 전도사 4명) 정도였다. 이런 교파 연합 현상은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모습이라는 점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종교의 독특한 모습이다.

연합교회의 주요 예배는 일요일예배(4부), 유아·유치·유년·초등·소년·중등예배(각 2부), 고등부예배(3부), 수요일예배(2부), 금요기도회, 새벽예배(매일), 남성/여성구역예배(매주)이다. 그 외에도 순장모임(수), 사역 훈련(목), 소망부모임(화·수), 한국어교육(월), 대학부모임(토·일), 청년 부모임(일), 청장년부모임(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일본·태국·인도·캄보디아·카자흐스탄 등 겨울 단기여행 등이 진행된다.<sup>50)</sup>

흥미로운 부분은 상해 지역에 개별 교회 대표자들의 초교파 모임인 '화동지역 목회자 모임'이 있다는 점이다. 제2차 현지조사 기간에 방문한 상해한인순복음교회의 담임목사에 따르면, 이 모임은 회원 교회들이 교민 광고지에 교회 광고를 낼 때 교회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크기의 광고를 게재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등의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한국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교파나 상해 지역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교회는 모임에 수용되지 않는다고 한다.<sup>51)</sup>

천주교의 경우, 교민들을 위한 별도의 한인성당은 없다. 교민들을 위한 공소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신자들을 위한 교육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천주교는 중칭남로(重慶南路)에 있는 중국인 성당인 성베드로성당에 임대료를 내고 매주 일요일 오후 5시에 한인 미사를 진행한다. 한인 미사의 주요 구성원으로는 2010년 현재 주임신부 임범중(프란치스

50) 《크리스천투데이》, 2006년 3월 7일자.

51) 연합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한인 개신교 성직자들이 '상해 화동지구 목회자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상해시의 한인 개신교 모임 장소(교회)는 20개 정도이며, 신자 수는 평균적으로 300명 정도라고 한다.



코), 원장수녀 박 안젤라, 수녀 전 프란치스카, 회장 배성욱 스테파노 등이다.<sup>52)</sup> 제2차 현지조사 기간에 인터뷰한 한 신자에 따르면, 한인 미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대략 500명 정도라고 한다. 미사 이외에 예비자 교리 주말반이 별도의 교육관에서 진행되는데, 상황에 따라 평일반도 운영된다고 한다.

특이한 부분은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구성된 주일학교가 광암단의 걸스카우트나 보이스카우트 활동으로 대체된다는 점이다. 광암단은 주일 학교를 스카우트 형태로 바꾸어 2009년 4월에 발대식을 가졌는데, 상해 한인공동체의 첫 가톨릭 스카우트 단체라고 한다. 발대식 당시 규모는 지도자 70명, 미취학 아동의 비버 스카우트 73명(5개 대), 초등학생의 컵 스카우트 123명(6개 대)이었고, 당시 육성단체장은 오상직 신부, 육성단체 부대표는 임범중 신부, 단대장은 배준우(루치아노)가 담당했다.<sup>53)</sup> 현재 광암단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sup>54)</sup>

그 외에 필자는 제1차 현지조사 기간인 2월 2일 점심 직후에 어떤 성직자의 도움으로 상하이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와 인터뷰를 하고, 매년 1회씩 진행된다는 ‘종교인 초청 오찬 간담회’(2008.9.)의 문건을 받아 2008년경 교민들의 종교 현황과 교세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자료에 따르면 간담회 참석 예정자 수는 개신교 교회별 인사 18명, 천주교·불교·원불교 인사 각 1명 등 모두 21명이다. 그리고 개신교 모임 장소(개교회)는 20여 개(신자 약 5,160명), 천주교 모임 장소는 1개(중국 성당, 신자 약 1,500명), 불교 모임 장소는 3개(신자 약 130명), 원불교 모임 장소 1개(신자 약 30명) 정도였다.

전반적으로 인터뷰 대상자들은 종교로 인해 생활에 활력을 얻는 듯이 보였다. 인터뷰 대상자들 가운데 평신자들은 대체로 상해시에서 종교생활을 한 이후와 그 이전의 삶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신앙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달라졌으며, 한국에서 살 때보다 다양한 종교 모임에 참여한다고 한다. 실제로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들의 종교생활에 대해 설명할 때 확신과 웃음이 가득한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한국의 종교인들이

52) 성베드로성당 홈페이지 [www.kmisa.com/2007/2007.html](http://www.kmisa.com/2007/2007.html).

53) 「중국 상하이 한인공동체에 첫 가톨릭 스카우트 창단」, 《상하이저널》, 2009년 4월 27일자.

54) 제1004광암단 홈페이지 <http://cafe.daum.net/gwangam>.

자유로운 종교생활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공통점을 보였다.

한편 종교단체의 규모, 민중위 또는 공안기관의 인지도 등에 따라 종교인들의 관심사에 차이가 보인다. 규모가 크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은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교민사회에 대한 기여에 관심을 보인다. 가령 연합교회의 관계지는 평일에 진행되는 성경공부반(주일반·화요일·목요일·인도자반), 방학 중에 진행되는 성경공부반(목요일·금요일) 등의 모임이 교민들에게 모종의 활동과 상호교류의 계기를 제공하여 교민들이 외국 생활에서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순기능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유아부실을 교민 신자뿐만 아니라 상해시 교민들에게 장래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국에 문상객을 받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종교의 순기능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그에 비해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낮은 종교단체의 개신교인·불교인·천주교인 등에게서는 교민사회에서 소속 종교단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이 확인되지 않았다. 물론 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인터뷰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규모가 큰 교회에 신자들이 몰리는 현상에 대한 걱정, 한국 교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 교민 불교 모임에 대한 조계종의 관심과 지원 등이 주요 관심사로 드러났다.

그 외에 인터뷰 대상자들에게서 두 가지 공통분모가 보였다. 하나는 공안에게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다는 의식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외출할 때, 종교 모임을 진행할 때, 전화를 할 때, 메일을 주고받을 때 등 전반적으로 공안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종교활동을 하려면 공안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어야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는 경우에 당당하게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필자가 보기에 그 당당함은 ‘임시지점’으로 허가된 연합교회의 경우와 다른 교회나 종교단체 관계자들 사이에, 그리고 종교활동장소의 확보 여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 IV. 상해시 한국종교의 미래

상해시 한국종교의 당면 과제와 관련하여 상하이총영사관의 2008년

회의 자료를 보면, 2008년 당시의 주요 현안은 ‘종교 집회 활동 및 장소 확보’ 문제였다. 그와 관련하여 한국종교의 자유로운 종교활동 보장, 한국종교의 중국 법령 준수, 교파 난립 문제, 중국인에 대한 선·포교 문제, 교민지 광고 문제 등이 거론된다. 당시 총영사관은 상호 의견 교환과 한국 종교문화 이해의 증진 도모를 명분으로 한인 종교단체 대표들과 민중위·공안국 관계자들의 좌담회를 주선하고자 한다. 아울러 2008년 5명의 개신교 성직자(목사)가 강제출국조치를 당했다는 점, 중국 측이 한국 교회의 난립을 우려하여 교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중국인, 특히 조선족의 종교집회 참석을 금지한다는 점, 교민지의 종교 광고 자제 등을 지적한다.<sup>55)</sup>

제1차 현지조사에서 인터뷰한 영사의 입장도 2008년의 경우와 유사하다. 중국이 한국종교의 비(非)법적인 종교활동장소를 묵인하는 상황에서 집회 장소 이외의 제3지역 집회, 중국인 대상 집회나 선·포교 등으로 관계자들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민들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총영사관에 건의하면 민중위나 공안국에 ‘호의성의 서한’을 보내줄 수는 있지만, 교민들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총영사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상해 한인종교의 주요 과제는 중국인 대상의 집회나 선·포교 금지, 교파·종파의 구분 지양 등과 유관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서 종교집회 활동과 활동 장소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다. 대체로 교민들은 선·포교활동을 포함한 ‘자유로운’ 종교활동 보장을 희망한다. 그에 대해 상해시인민정부는 교민들이 유관 규정에 따라 종교활동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수의 교민들은 유관 규정을 지키면 ‘자유로운’ 종교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된다. 그에 대해 상해시인민정부는 교민들의 비법적 종교활동이라도 다른 요인들이 개입되지 않으면 묵인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이러한 묵인은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언제든지 법적 제재로 바뀔 수 있다. 상해시인민정부에게 법적 처벌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과제와 관련하여 상해시 한인종교의 미래는 네 가지 지점에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첫째, 상해시 종교정책의 원칙과 적용에 대한

55) 「2008년도 ‘종교인 초청 오찬 간담회’(2008.9.)」, 상하이총영사관 자료(2010).

이해 정도이다. 종교정책의 기본인 삼자(三自)원칙은 중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을 전제하고, 외국인에게 허용된 범위를 지정한다.<sup>56)</sup> 가령 외국인은 종교활동장소에서 진행되는 중국의 종교 모임에 참가할 수 있고(3조),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부서가 인가한 장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 있고(4조), 중국 성직자를 초청하면 종교의식을 진행할 수 있다(5조). 그렇지만 휴대용을 제외하면 종교용품을 반입할 수 없고(6조), 종교단체나 사무기관이나 종교활동장소나 종립학교 등을 세울 수 없다(제8조).<sup>57)</sup> 또한 외국인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성직자로 임명하거나 선·포교 활동을 하거나, 종교 관련 물품을 제작·판매·배포할 수 없으며, 법적 종교활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집단적인 종교 모임이나 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17조 4항). 다만 외국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은 종교활동장소나 지정·허가된 임시지점에서만 진행될 수 있다.<sup>58)</sup>

특히 중국은 ‘국가통일, 민족단결, 사회공안’의 파괴, 중국인의 ‘신체건강’에 대한 손해, 국가교육제도의 방해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종교활동장소에 민감하다(제4조).<sup>59)</sup> 이런 민감한 반응은 무엇보다 중국의 특수성, 즉 다민족국가가 종교로 인해 분열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가령 2009년 2월 중국의 중앙 사회치안 종합관리위원회의 ‘국내외 테러 세력 단속 계획’에도 사회 화합과 안정 모색의 명분 아래 ‘국내외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폭력 테러 세력 및 극단주의 종교 세력들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2009년 주요 치안 업무에 포함된다.<sup>60)</sup> 2009년 11월 상해시 공안국이 ‘지하교회’를 폐쇄하고, 공원의 ‘불법’ 예배를 이유로 지하교회 지도자 6명을 체포한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sup>61)</sup>

56) 자치(自治)는 교회나 사찰의 자립적 관리(외국인 지배 거부), 자양(自養)은 교역자 자체 양성(외국인 간섭 거부), 자전(自傳)은 자체적으로 포교와 전도(외국인 전도 활동 불용) 등을 의미한다.

57)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1994년 1월 31일 国务院令 第144号发布); 국가종교사무국 홈페이지 [www.sara.gov.cn/GB//zcfg/xzfg/37d8114b-0a1c-11da-9f13-93180af1bb1a.html](http://www.sara.gov.cn/GB//zcfg/xzfg/37d8114b-0a1c-11da-9f13-93180af1bb1a.html).

58)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实施细则」(2000년 9월 26일 国家宗教事务局令 第1号发布) 第七条; 第十六条; 第十七条; 第十九条.

59) 「宗教活动场所管理条例」(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第145号 现发布 「宗教活动场所管理条例」, 自发布之日起施行. 总理 李鹏 一九九四年一月三十一日) 第四条.

60) 「(2.4-6)중국 상해지역 정세동향」(게시일 2009.2.9), 외교통상부([www.mofat.go.kr/help/search/index.jsp](http://www.mofat.go.kr/help/search/index.jsp))의 참고자료 ; 《東方早報》, 2009년 2월 5일자.

61) 「中 상해시, 지하교회 지도자들 체포」, 《연합뉴스》, 2009년 11월 23일자.

중국 측의 규정에 따라 상해시의 한국종교도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종교활동장소를 임대하거나 종교활동 임시지점에서 교민만을 대상으로 종교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중국 성당을 임대한 상해한인본당<sup>62)</sup>, 종교활동 임시지점을 허가·지정받는 연합교회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어떤 장소를 종교활동 임시지점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상해시 정부와 상해시의 종교단체, 한국 종교단체 사이에 이해가 어느 정도 일치해야 하는데 그 일치 과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다수의 한국종교는 종교활동장소나 임시지점과 무관하게 교민들이 마련한 별도 공간에서 종교활동이 이루어지는 제3의 존재 형태를 취하게 된다.

여러 인터뷰 대상자들에 따르면, 호텔 연회장 등 공식 장소를 다른 명목으로 빌려 종교활동을 했을 때 공안 당국은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에 비해 아파트나 사무실을 빌려 종교활동을 할 때 소음 등으로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가면 그동안 묵인하던 종교활동장소와 모임에 제재를 가한다고 한다. 비법적인 종교활동장소에 대해 공안국의 감시보다 주변의 민원 발생을 우려하는 셈이다. 그렇지만 상해시 교민들은 주택을 개조하여 종교활동장소로 활용하고 있고, 민원만 조심하면 된다는 인식을 보이기도 한다.

둘째, 교민사회에 대한 적응 정도이다. 이는 한국종교가 상해시의 교민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에 해당된다. 개항장과 조계지 등의 역사로 인해 일찍부터 교민사회가 형성된 상해에는 현재도 축구모임, 취미모임, 한인상회연합회 등 다양한 모임이 존재한다.<sup>63)</sup> 종교인들도 교민으로서 이러한 모임들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종교가 상해시의 교민사회에 적응하려면 다양한 교민 모임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종교들은 교민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봉사자의 이미지와 순기능을 부각시켰다. 가령 2007년 재정 형편상 운영이 곤란한 상해한국 학교에 대한 금강사의 기부<sup>64)</sup>, 2008년 2월 폭설 재해민들에 대한 상해의

62) 「정진석 추기경, 상해한인본당에 축하메시지」, 《가톨릭신문》 제2664호, 2009년 9월 13일자.

63) 「재외동포단체조직현황/2008년도」, 재외동포재단(www.korean.net/main/main\_index.jsp) 자료실(동포자료실) 324번 게시물.

64) 「금강사, 한국학교에 발전기금 10만 원 전달」, 《상하이저널》, 2007년 6월 19일자.

15개 교회연합의 폭설피해성금 모금<sup>65)</sup>, 2010년 상해한국학교에 대한 푸둥은혜교회와 연합교회 등의 기부<sup>66)</sup> 등이 그에 해당된다. 2009년 2월,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과 관련된 상해한인성당의 빈소 마련 등도 이러한 봉사 이미지와 무관하지 않다.<sup>67)</sup>

유의할 부분은 종교단체들이 교민사회에서 봉사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때 봉사와 선·포교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민을 선·포교 대상으로만 간주하다보면 봉사도 선·포교 방편으로 이해되어 봉사자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종교단체들은 스스로를 교민사회의 일원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봉사의 일차적인 목적도 교민 또는 교민사회 자체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교민사회의 적응을 위해 교민들을 계층, 성, 연령, 애로점 등을 다양한 기준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처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상하이총영사관과의 소통 정도이다. 이는 국가 이미지 제고와 자체 안전을 위한 것이다. 필자는 인터뷰 과정에서 대체로 종교활동과 관련된 상하이총영사관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영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필자도 교민들의 종교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 영사관의 주요 업무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느낌은 상하이총영사관에서 교민들의 종교활동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하이총영사관이 교민들의 종교활동에 전적으로 무관심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가령 2008년 9월에는 총영사가 장녕구(长宁区) 비엔바이핑(卞百平) 청장에게 한국인의 해외생활 중 종교활동이 매우 중요하고, 상해 소재 한국교회의 1/3이 장녕구에 소재하는 만큼 보다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위해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에 대해 청장은 종교활동장소 해결을 위해 시정부와 협의 노력하겠다고 답변한다.<sup>68)</sup> 동년 11월에는 총영사가 민중위 주임(周富長)에게 종교활동과 관련한 교민들의 관심사를 전달한다. 그에 대해 민중위 주임은 교민들의 종교활동 상황을 이해하며, 종교활동이 법 내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

65) 「한국교민, 中 폭설피해에 온정 '가득」, 《상하이저널》, 2008년 2월 19일자.

66) 「기부천사 온정 '상해한국학교' 녹였다」, 《상하이저널》, 2010년 1월 3일자.

67) 「故 김수환 추기경 추모 발길 上海에도 이어져」, 《상하이저널》, 2009년 2월 24일자.

68) 「김정기 총영사, 창녕취(长宁区)청장 면담」, 《상하이저널》, 2008년 9월 2일자.

다는 뜻을 전한다. 그리고 향후 한국 방문 시에 한국인의 종교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총영사에게 요청한다.<sup>69)</sup>

물론 교민들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상하이총영사관의 노력을 불신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하이총영사관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총영사관은 교민사회와 관련하여 민중위나 공안국의 공식 접촉 채널이라는 현실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상하이총영사관이 관심을 기울일 대상이 교민들의 종교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며, 관심의 방향도 한국종교의 확대 지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관심은 종교를 통해 살아가는 교민에 대한 관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상해시 민중위 및 공안기관의 종교 담당자들과 한국 내 종교들 사이에 소통 창구가 다원화되는 정도이다. 이러한 소통 창구는 한국종교의 중국 내 선·포교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가령 2006년 3월에 한국의 서울열방선교교회, 2008년 2월에 청도열방선교교회(靑島萬邦宣敎教會)를 개척한 상해열방선교교회(上海萬邦宣敎教會)는 담임목사가 1998년의 '선교한국' 프로그램<sup>70)</sup>에서 영향을 받아 개척한 사례이다.<sup>71)</sup> 이 외에도 한국 선교단체에서 성직자 교육을 받는 중국인들이 다소 존재한다.

현재까지 양자의 소통 창구는 상호 초청에 의한 방문이다. 가령 2006년 6월에는 조계종 포교원장(도영스님)이 북경 광제사에서 진행된 '재중국 한인불자회 연합수계법회'(수계자 100여 명, 사부대중 200여 명)에서 전계대화상을 맡아 오계를 수지한 것도 중국불교협회 측의 초청에 의한 것이다.<sup>72)</sup> 그리고 2009년 2월에 상해 삼자교회의 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단 7명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사랑의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방문한 것도 초청에 의한 것이다.<sup>73)</sup>

69) 주상하이 총영사관 <http://shanghai.mofat.go.kr/view/view13/id/TO5597>(게시일: 2009. 06.16).

70) 선교한국 [www.missionkorea.org/index.asp](http://www.missionkorea.org/index.asp).

71) 중국선교연구원 [www.inbora.com/gnuboard/bbs/board.php?bo\\_table=board12&wr\\_id=23&page=4](http://www.inbora.com/gnuboard/bbs/board.php?bo_table=board12&wr_id=23&page=4).

72) 「재 중국 한인불자 연합수계법회, “외국생활 어려워도 신심으로 극복”, 《불교신문》, 2006년 6월 13일자; 「재 중국 불자 간담회, 안정적 실행활동 방안 마련 시급», 《불교신문》, 2006년 6월 13일자.

73) 「한국교회를 배우자», 《크리스천투데이》, 2009년 2월 5일자; 「한국교회 배우러 온' 中 상해 삼자교회 대표단, NCCK·사랑의교회 방문 …… 주일예배는 여의도순복음교회서」, 《크리스천투데이》, 2009년 2월 5일자.

이러한 상호 초청 형식의 교류는 상호간에 이점이 교차하면서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상호 초청 형식도 중국에서 인정하는 5대 종교에 한정, 특히 개신교와 불교에 한정된다. 그리고 개신교의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이단 또는 사이비로 간주된 종교단체 관련 정보를 중국 개신교계에 전달하기 때문에 상호 초청 형식의 교류가 '주류' 교단 위주로 진행된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상호 초청 교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상해시 교민들이 종교생활과 관련하여 좀 더 자유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 초청 교류가 한국종교와 민중위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면 한국종교와 공안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형태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가령 상해시 공안국은 한국 개신교계가 '새터민' 보호와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탈북민의 진입을 억제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또는 탈북민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개신교 목회자들과 접촉한다.<sup>74)</sup> 물론 이러한 교류가 교민사회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은 감지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현재까지 중국은 다섯 개의 종교만 인정하는 '공인교 정책'을 취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정통'을 전제한 '사이비'나 '이단' 등의 수식어들이 유행한다. 그렇지만 중국의 종교 상황에서 다소의 변화가 감지된다. 가령 현재 중국 정부는 문화혁명 당시와 달리 단순히 강압 조치로 종교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2000년대에 유학과 연구자들이 늘어나면서 민족종교, 신흥종교, 민간종교 등의 개념이 새롭게 소개·정립되고 있다.<sup>75)</sup> 이런 개념들은 향후 중국의 종교 담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 내에 새로운 종교 담론이 등장한다면 그로 인해 공인종교 정책에도 다소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상해시가 외국에 개방되는 정도가 높아지면서 교민사회의 경제적·문화적 역량이 확대된다면 교민

74)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www.cnkr.org/zeroboard/view.php?id=kor\\_news&no=1085](http://www.cnkr.org/zeroboard/view.php?id=kor_news&no=1085) (게시일: 2008.09.09).

75) 가령 중국사회과학출판사(中国社会科学出版社)는 『云南少数民族宗教文化与审美』(牛军, 2002), 『新兴宗教初探』(高师宁, 2006), 『韩国民族宗教运动史』(노길명·김홍철·윤이흠·황선명, 许明哲·李梅花 译, 2009), 『中国民间宗教史(上, 下)』(马西沙·韩秉方, 2007) 등을 발간했다. 高师宁은 신흥종교를 '현대사회에 출현한 새로운 형식의 정신운동과 종교단체(现代社会出现的某些新形式的精神运动和宗教团体)'라는 개념으로 소개한다(1쪽).



들이 외국인으로서 겪는 종교활동에 대한 제약도 점차 약화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종교정책의 원칙을 감안하면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이다.

## V. 맺음말

다수의 교민들에게 종교가 중요한 것은 통계 결과로도 확인된다. 최근 상해 포서(浦西) 지역의 홍구구(虹口區) 인근 4개 대학 100명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09.10.)에 따르면, 종교인 학생(전체 학생의 61%, 그중 개신교 52%, 불교 23%, 천주교 17%, 기타 8%) 가운데 40%가 여전히 상해에서 종교활동을 한다. 비종교인 학생(39%)은 필요성을 못 느꼈거나(19%), 시간이 없거나(11%), 관심이 없거나(9%) 등의 이유로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유학생생활 동안 종교인이 된 학생의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sup>76)</sup>

학생들의 경우처럼, 상해 지역에 거주하면서 종교인이 된 교민들의 수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종교인이 된 교민, 질병 극복 과정에서 종교인이 된 교민 등 다양한 경우를 접하면서, 그들에게 종교가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와 관련하여 필자는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지금에서야 알았을까?”라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말을 기억한다. 물론 이러한 서술은 교민들의 종교생활을 긍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종교가 교민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핵심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종교를 삶의 중심에 둔 교민들이 감시의 시선을 과도할 정도로 의식하게 된다는 점이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 표면적으로는 공안의 감시망으로 인한 추방 사례 등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이 주요 원인일 것이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권력을 기준으로 양자의 서로 다른 지향점이 상하 관계로 배치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민들은 중국인에 대한 선·포교를 포함한 종교활동과 모임의 ‘자유’를 지향한다. 그렇지만 상해시인민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선·포교 금지와 비법적인 종교활동장소 규제 등을 포함하는 유관 규정과 지침의 준수, 교민들의 종교활동을

76) 「상하이 유학생들의 종교현황」, 《상하이저널》, 2009년 10월 9일자.

적절하게 노출하여 관리 대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 두 지향에는 명확한 접점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민중위나 공안국이 교민의 종교활동을 묵인하는 경우에도 '권력의 약자'인 교민들에게는 '상상된 감시의 시선과 불안'이 경험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네 가지 지점에서 상해시 한국종교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내용은 상해시의 종교정책의 원칙과 적용에 대한 이해 정도, 교민사회에 대한 적용 정도, 상하이총영사관과의 소통 정도, 상해시 민중위 및 공안기관 종교담당자들과의 소통 정도 등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종교활동 임시지점의 적극적인 허가 등 상해시 종교정책에 변화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어떤 음식점의 주변 경치와 내부 분위기와 직원들에 대해 강한 호감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 음식점을 적극 추천할 수 있다. 종교인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특정 종교를 타인에게 적극 추천할 수 있다. 그 체험이 신념(belief)의 토대가 될 정도로 강렬했다면 선·포교 의지도 그만큼 강렬해진다. 그렇지만 한국종교가 중국에 진출할 경우, 전달할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중국 상황에 대한 이해'와 '맥락에 따른 전달방식'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피전달자를 포함한 주변인들에게 모종의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上海市宗教事务条例」 1995年11月30日上海市第十届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三次会议通过. 根据2005年4月21日上海市第十二届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九次会议, 『关于修改「上海市宗教事务条例」的决定』 修正.
- 「宗教活动场所管理条例」(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145号 现发布「宗教活动场所管理条例」, 自发布之日起施行. 总理 李鹏 一九九四年一月三十一日) 第四条.
-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实施细则」(2000年9月26日国家宗教事务局令1号发布) 第七条; 第十六条; 第十七条; 第十九条.
- 「上海市宗教印製品管理辦法」(發布日期: 1997.12.31), 『大陸宗教概況(一九九六年~二〇〇一年)』, 行政院大陸委員會, 2002.
- 「上海市宗教活动场所管理规定」(一九九五年五月十九日上海市人民政府第三号令发布) 第七条.
-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1994年1月31日国务院令144号发布).
- 「2008년도 '종교인 초청 오찬 간담회'(2008.9.)」, 상하이총영사관 자료, 2010.
- 강돈구, 「현대 중국의 한국종교 -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54, 한국종교학회, 2009.
- 고병철, 「개혁개방 이후 중국 길림성의 종교 정책과 한국 종교」. 『중국학논총』 25,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09.
- 박미라, 「중국 요녕성 한국종교의 현황과 문제」. 『아시아문화연구』 17,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9.
- 孫科志, 『상해한인사회사』. 도서출판 한울, 2001, 190-201쪽.
- 윤용복, 「중국 흑룡강성의 한국 종교」. 『종교문화비평』 17,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0.
- 최병욱, 「近代 中國 不平等條約 中の 基督教 관련 조항의 의미」. 『중국근현대사연구』 37집, 중국근현대사학회, 2008, 1-22쪽.
- 高师宁, 『新兴宗教初探』.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6.
- 孫科志, 「上海韓人的宗教活動」. 『檔案與史學』, 2000, 58쪽.
- 阮仁澤·高振農 主編, 『上海宗教史』. 上海人民出版社, 1992, 1020쪽.
- 牛军, 『云南少数民族宗教文化与审美』.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2.
- 胡煥庸 主編, 『中國人口(上海分册)』. 1987, 320쪽.
- 张化, 『上海宗教通覽』. 上海古籍出版社, 2004, 558-566쪽.
- 马西沙·韩秉方, 『中国民间宗教史(上, 下)』.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7.

《국민일보》, 2005년 7월 3일자.

《상하이저널》 제538호, 2010년 2월 27일자, 교회 광고.

《크리스천투데이》, 2006년 3월 7일자.

「故 김수환 추기경 추모 발길 上海에도 이어져」, 《상하이저널》, 2009년 2월 24일자.

「光復祈禱會餘聞」, 《독립신문》, 1921년 2월 17일자(출처: 독립기념관).

「교회건물, 교민사회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상하이저널》, 2009년 1월 13일자.

「금강사, 점안식 행사 가져(만야성사와 함께 예불)」, 《상하이저널》, 2006년 5월 30일자.

「금강사, 한국학교에 발전기금 10만원 전달」, 《상하이저널》, 2007년 6월 19일자.

「기부천사 온정 '상해한국학교' 녹였다」, 《상하이저널》, 2010년 1월 3일자.

「김정기 총영사, 창닝취(长宁区)청장 면담」, 《상하이저널》, 2008년 9월 2일자.

「상하이 유학생들의 종교현황」, 《상하이저널》, 2009년 10월 9일자.

「상하이 한인법당 '금강사' 우중루 이전」, 《상하이저널》, 2008년 1월 29일자.

「상하이시 종교관련 법률 안내」, 《상하이저널》, 2006년 4월 11일자.

「이전안내 - 한인불교사찰 태안사」, 《상하이저널》, 2008년 5월 31일자.

「재 중국 불자 간담회, 안정적 실행활동 방안 마련 시급」, 《불교신문》, 2006년 6월 13일자.

「재 중국 한인불자 연합수계법회」, 《불교신문》, 2006년 6월 13일자.

「정진석 추기경, 상해한인본당에 축하메시지」, 《가톨릭신문》 제2664호, 2009년 9월 13일자.

「종교행사 안내」, 《상하이저널》, 2006년 2월 15일자.

「中 상해시, 지하교회 지도자들 체포」, 《연합뉴스》, 2009년 11월 23일자.

「중국 내 한인불자 실행활동」, 《불교신문》 2255호, 2006년 8월 23일자.

「중국 상하이 한인공동체에 첫 가톨릭 스카우트 창단」, 《상하이저널》, 2009년 4월 27일자.

「한국교민, 中 폭설피해에 온정 '가득」, 《상하이저널》, 2008년 2월 19일자.

「한국교회 배우리 온' 中 상해 삼자교회 대표단」, 《크리스천투데이》, 2009년 2월 5일자.

「한국교회를 배우자」, 《크리스천투데이》, 2009년 2월 5일자.

「한국사찰 태안사 점안식 가져」, 《상하이저널》, 2006년 3월 13일자.

「한인불교 사찰 태안사, '불자들의 안식처 될 터」, 《상하이저널》, 2006년 2월 28일자.

「한인불자 실행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언」, 《불교신문》 2255호, 2006년 8월 23일자.

「중국의 국가권력기구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2009.9),  
자본시장연구원 [www.kcmi.re.kr](http://www.kcmi.re.kr).

「중국체류관련 유의사항」(2005.5.27), 주선양총영사관 <http://chn-shenyang.mofat.go.kr>.

국가종교사무국 [www.sara.gov.cn](http://www.sara.gov.cn).  
금강사 <http://cafe.daum.net/zentea114>.  
능인선원 [www.gotobuddha.org/home/default\\_in.asp](http://www.gotobuddha.org/home/default_in.asp), 5336번 자료.  
대불린 총동문회 [www.daebul.or.kr](http://www.daebul.or.kr).  
민중위 [www.shmzw.gov.cn](http://www.shmzw.gov.cn).  
상하이저널 [www.shanghaijournal.com/biz.php?mode=search&code=BB](http://www.shanghaijournal.com/biz.php?mode=search&code=BB).  
上海市人民政府 연감 [www.shanghai.gov.cn](http://www.shanghai.gov.cn).  
上海市人民政府 [www.shanghai.gov.cn](http://www.shanghai.gov.cn).  
상해엑스포 [www.expo2010.cn](http://www.expo2010.cn).  
상해한국상회 [www.kochamsh.com/makeinfo.php](http://www.kochamsh.com/makeinfo.php).  
선교한국 [www.missionkorea.org/index.asp](http://www.missionkorea.org/index.asp).  
성베드로성당 [www.kmisa.com/2007/2007.html](http://www.kmisa.com/2007/2007.html).  
외교통상부 국가별정보DB <http://countryinfo.mofat.go.kr/index.html>.  
외교통상부 [www.mofat.go.kr/help/search/index.jsp](http://www.mofat.go.kr/help/search/index.jsp).  
人民网 法律法规库 [www.people.com.cn](http://www.people.com.cn).  
재외동포재단 [www.korean.net/main/main\\_index.jsp](http://www.korean.net/main/main_index.jsp).  
제1004광암단 <http://cafe.daum.net/gwangam>.  
주상하이총영사관 <http://shanghai.mofat.go.kr/view/view13/id/TO5597>.  
중국선교연구원 [www.inbora.com](http://www.inbora.com).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www.cnkr.org](http://www.cnkr.org).

## 국 문 요 약

본고의 목적은 상해시인민정부의 종교정책과 교민들의 종교 활동을 살펴보고, 한국종교가 상해 지역에서 당면한 현실을 진단하면서 그 미래를 전망하는 데에 있다. 이는 교민들의 종교활동에 대해 학문적으로 대상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에 따라 제2장(상해시의 종교정책과 현황)에서는 상해시의 정치권력 구조, 상해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종무행정 업무, 「상해시종교사무조례」, 상해시 중국종교의 현황 등을 검토하였다. 제3장(상해시의 한국종교)에서는 현지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상해시의 한국종교에 대한 현황, 교민들의 종교생활과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제4장(상해시 한국종교의 미래)에서는 상해시의 한국종교의 주요 과제를 지적하고, 네 가지 지점에서 그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그 내용은 상해시 종교정책의 원칙과 적용에 대한 이해 정도, 교민사회에 대한 적응 정도, 상하이총영사관과의 소통 정도, 상해시 민중위 및 공안기관 종교담당자들과의 소통 정도 등이다.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 5대 종교만 인정하는 ‘공인교 정책’을 취한다. 그 속에서 ‘정통’을 전제한 ‘사이비’나 ‘이단’ 등의 수식어들이 유행한다. 그 속에서 교민들은 감시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종교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유연한 대처 속에서 2,000년대 들어 민족종교, 신흥종교, 민간종교 등의 새로운 개념들이 소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들이 향후 중국의 종교 담론, 공인종교정책 등에 개방적 측면의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해시의 개방 정도가 높아지면서 교민사회의 경제적·문화적 역량이 확대된다면 교민들의 종교 활동에 대한 제약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투고일** 2010. 6. 24.

**수정일** 2010. 8. 5.

**게재 확정일** 2010. 8. 9.

**주제어(keyword)** 중국(China), 상해(Shanghai), 종교정책(Religious Policy), 교민(Oversea Korean), 한국종교(Korean Religions), 해외선교(Oversea Mission)